

한국놀이치료학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협약서

한국놀이치료학회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상담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에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운영 원칙)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며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협력 분야)

모든 당사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뢰된 온라인 상담 지원
2.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3. 보육교직원과 부모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제공
4. 놀이치료학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홍보 및 관련 정보 안내
5.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 분야

제4조 (기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각종 기밀정보와 공동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밀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키지 않으며, 이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5조 (효력)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일 전 서면으로 협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해지)

1. 일방은 다른 일방이 본 협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해지할 수 있다.
2.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당사자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등)

본 협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 이후의 협력 사항 및 활동내역 등을 매스컴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보도자료 등으로 알리는 경우,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8조 (법적구속력)

본 협약은 계약 당사자 간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4조 기밀유지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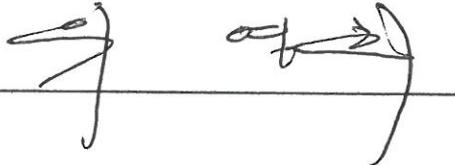
제9조 (수정 및 변경)

본 협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016년 11월 23일



학회장 위 영 희





센터장 마 미 정

